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29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1743 취득세(과점주주)과세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4. 23.

주 문

1. 피고가 2019. 1. 7. 원고에게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29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4. 10. 20. 발행주식의 총수 40,000주, 자본금 2억 원,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원고, 사내이사 C, 감사 D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후 B은 보통주 20,000주를 추가 발행하여 2014. 10. 27. 자본금을 3억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나. 2015. 3. 31. [redacted]세무서에 제출된 B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D이 발행주식 총수의 90%인 54,000주를, C가 나머지 10%인 6,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7. 6. D으로부터 D의 주식을 모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3. 31[redacted]세무서에 위와 같이 원고가 D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6. 7. 6. D으로부터 B의 발행주식의 90%(54,000주)를 양수함으로써 B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9. 1. 7.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2. 7.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21.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29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을 설립할 때부터 90%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2015. 3. 31. [redacted]세무서에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는 세무업무 대행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며, D은 B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B의 주주였던 적이 없다. 원고는 뒤늦게 이를 알게 되어 주주 현황을 바로 잡고자 2016. 7. 6. D과 사이에 형식적으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관할 세무서에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 D으로부터 B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에 관한 규정과 지방세기본법 제17조의 실질과세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B을 설립할 때부터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9호증,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redacted]세무서, [redacted]세무서, 세무법인 E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14. 10. 20. [redacted]등기소에 제출된 B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식인수증에 의하면, B의 발기인은 원고와 C, 총 2명이었고, D은 발기인이 아니었다. 발기인 2명이 그 당시 발행주식 전부(40,000주)를 인수하였으며, 원고가 그 중 90%에 해당하는 36,000주를, C가 10%에 해당하는 4,000주를 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29

기인으로서 인수하고 주금을 전부 납입하였다.

② B은 2014. 10. 23. 임시주주총회에서 보통주식 20,000주를 추가로 발행하고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주주총회 의사록에 그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주주로 원고, C가 기재되어 있다.

③ B은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을 변경하고, 2014. 10. 27. 법인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주식배정표, 주주명부에도 원고가 발행주식 총수의 90%에 해당하는 54,000주를, C가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6,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한편, D은 자신이 B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2016. 7. 6. 원고와 주식 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득이 작성한 것이지, 실제로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⑤ 2015. 3. 31. [redacted]세무서에 제출된 B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는 세무업무 대행자인 세무법인 E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데,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D이 발행주식 총수의 90%인 54,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세무법인 E은 B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중 D 부분이 착오로 작성되었음을 파악한 후 [redacted]세무서에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였고, [redacted]세무서는 세무법인 E의 요청에 따라 B의 법인 설립등기 시 등기소에 제출된 서류 등을 확인한 후, D이 아닌 원고가 발행주식 총수의 90%인 54,000주를 보유하는 내용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정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주식 발행 및 인수 경위, B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과 정정 경위 등을 참작해 보면, 원고는 B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90%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29

취득함으로써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세금 부담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기한 의결권 등을 통해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D은 실제로 B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착오로 인하여 당초 주주로 잘못 기재된 것에 불과하며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주주로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D이 아닌 원고가 B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90%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법인 설립 후에 B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간주취득에 관한 세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29

득에 관한 법리와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29

별지 1.

[취득세(과점주주) 과세내역]

구분	세목	과세 대상	귀속 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단위 : 원)			
					계	산출액	가산세	
							구분	세액
추징 세액	취득세	[redacted] 외	2016	5,264,127,900	153,143,990	105,282,550	신고불성실	21,056,510
							납부불성실	26,804,930
	농특세				13,208,740	10,528,250	납부불성실	2,680,490
	합계				**166,352,730**	115,810,880	신고불성실	21,056,510
							납부불성실	29,485,4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29

별지 2.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29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끝.